



학생단체행사관리규정

제정일	2016. 8. 1
개정일	2019. 1. 1
개정차수	1차
담당부서	학생서비스과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 (이하 “본교” 라 한다) 학생들의 교·내외 학생행사 시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예방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란 총학생회, 학회장연합회, 대의원회, 동아리 등 본교에서 승인한 학생단체를 말한다.
2. “대학본부 등”이라 함은 대학본부, 각 행정부서, 각 학부(과)를 말한다.
3. “학생단체행사”란 학생회 및 대학본부 등이 주관하여 교·내외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는 행사를 말한다.

제 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생회, 대학본부 등에서 주관하는 학생단체행사에 적용한다.

단, 학교승인을 받지 않고 학생 임의적으로 주관하는 행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조 (학생단체행사 안전관리책임자) 본교의 학생단체행사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학생처장이 되며, 안전관리분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1. 행정부서 주관 행사 : 부서장
2. 학부(과) 주관 행사 : 학부(과)장
3. 총학생회, 학회장연합회, 대의원회 주관행사 : 학생처장
4. 동아리 주관행사 : 동아리지도교수
5. 그 밖에 학생단체행사 :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지정하는 자

제 5조 (행사의 신청 및 승인) 각 학부(과) 및 학생회가 교내·외에서 학생단체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사계획서를 행사 개시 7일 전까지 학생서비스과로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각 행정부서 주관의 행사는 제외한다.

제 6조 (행사의 불허 및 취소) 학생단체행사 총괄책임자는 학생단체행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생단체행사 승인을 불허할 수 있으며, 일단 허가한 경우라 하더라도 행사 전 또는 행사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본교 이념, 학칙 및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2. 학내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거나 학교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3.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제 7조 (학생안전지도) 안전관리분임책임자 및 지명된 교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1. 학생단체행사의 취지 및 행동강령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금주 및 질서유지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처방안 및 연락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8조 (교육) 교·내외 학생단체행사 시 안전관리분임책임자는 행사참여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시행하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학생 및 행사 진행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요원 배치 현황
2. 비상대피로 안내
3. 화재예방 시설 안내
4. 인권침해(신체적 가해행위,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성적 가해행위) 방지 교육
5. 그 밖에 음주, 폭행 등 단체 활동 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예방 교육

제 9조 (교내시설 내 행사) 교내 시설 내부에서 학생단체행사 진행시에 안전관리분임책임자는 시설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련 부서에 의뢰하여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및 대피로 확보 여부
2. 시설 노후 또는 부실 시설 여부

제10조 (교외 행사) ① 교외 행사시에 안전관리분임책임자는 행사 전 사전 답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장소) 안전에 관한 사항
 2. 교통수단 안전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등에 관한 사항
 4.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사항
 5. 비상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사항
- ② 학생회 주관 학생단체행사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분임책임자가 지정한 학생대표로 하여금 사전답사를 대신하도록 하여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 (사고대처 및 보고) ① 안전관리분임책임자는 각종 학생단체행사와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사고개요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고 수습을 신속하게 먼저 실시한 후에 보고할 수 있다.

- ② 안전관리분임책임자는 사고수습 후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제1항과 제 2항에 따른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학생단체행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교원징계위원회(교원), 직원징계위원회(직원), 학생지도위원회(학생)에 요청하여 처리한다.

제12조 (사고대책위원회 구성) ① 학생단체행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분임책임자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총장의 지시에 따라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고대책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총장, 행정처·국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 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